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38호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탈시설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탈시설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복지환경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042-270-5127,
FAX 042-270-5039, E-mail : kimcs461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①시장”을 “시장”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탈시설 자립지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제5조 각 호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제2조(정의) -----뜻은-----</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절차)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계획을 확정한다.</p>	<p>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절차) -- -- 제3조 제 1 항</p> <p>-----</p> <p>-----</p> <p>-----</p>
<p>제5조(자립생활 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9. (생략)</p> <p>〈신 설〉</p> <p>10. (생략)</p>	<p>제5조(자립생활 지원) 시장</p> <p>-----범위</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탈시설 자립지원</p> <p>11.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5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p> <p>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제5조 각 호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2.3.31] [법률 제10517호, 2011.3.30, 일부개정]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 (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예산명세서

1. 재정수반요인

-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탈시설자립지원금과 대전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예산이 수반됨.

2. 예산명세서 첨부 근거규정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

3. 비용추계

○ 소요예산 : 190,000천원

- 산출내역

사업명	산출내역	소요예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 2곳(한밭, 보문) × 150,000천원 = 300,000천원 - 국비40% : 120,000천원, 시비60% : 180,000천원 - 기반영 예산 반영 : 2012년 예산 지원 현황	180,000천원
탈시설자립지원금	· 2명 × 5,000천원 = 10,000천원(시비100%) - 2013년 예산 반영 계획	10,000천원